

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제1조중 “순국선열유족”을 “독립유공자유가족”으로 한다.</p> <p>안 제5조제2항중 “새로운 계약자의”를 “계약자의”로 하고, “영업을 개시 하지”를 “영업을 하지”로 한다.</p> <p>안 별표중 “독립유공자후손(자녀 및 손자·녀)”을 “독립유공자유가족”으로 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중 “장애인복지법 제26조, 노인복지법 제15조”를 “장애인복지법 제38조, 노인복지법 제25조”로 하고, “순국선열유족”을 “독립유공자유가족”으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호중 “(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)”을 “(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)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는 이를 삭</p>	<p>제한다.</p> <p>제5조의 제목 “(우선계약)”을 “(계약)”으로 하고, 같은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,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조례 제3181호('95. 4. 25)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의 부칙 제2항, 조례 제3210호('95. 6. 10)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 제2항 및 조례 제3267호('96. 1. 15)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 제2항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</p> <p>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[별 표]</p> <p>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 5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순위</th> <th>장 애 인</th> <th>65세 이상 노인</th> <th>모자가정의 여성</th> <th>독립유공자유가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장애인 등급 1~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</td> <td>거택보호대상자</td> <td>거택보호대상자</td> <td>생활보호대상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장애인 등급 3~4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</td> <td>자활보호대상자</td> <td>모자복지법 제5 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 한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장애인등급 5~6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순위	장 애 인	65세 이상 노인	모자가정의 여성	독립유공자유가족	1	장애인 등급 1~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	거택보호대상자	거택보호대상자	생활보호대상자	2	장애인 등급 3~4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자활보호대상자	모자복지법 제5 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 한자	미과세대상자	3	장애인등급 5~6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
순위	장 애 인	65세 이상 노인	모자가정의 여성	독립유공자유가족																	
1	장애인 등급 1~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	거택보호대상자	거택보호대상자	생활보호대상자																	
2	장애인 등급 3~4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자활보호대상자	모자복지법 제5 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 한자	미과세대상자																	
3	장애인등급 5~6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																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되는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이 표의 생활보호대상자,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본다.

※ 이 표에서 "미과세대상자"이라 함은 개인 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"를 "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·시험수수료징수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보건연구에 관한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"를 "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(이하 "검사·시험"이라 한다.)을 의뢰하는 자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"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수료) ①검사·시험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.

②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.

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·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
2.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

④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·운영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정밀검사·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검사의뢰 등) ①검사·시험의뢰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액에 상당하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②검사·시험의뢰가 취소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검사·시험의뢰자의 귀책

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환불할 수 있다.

③검사·시험의뢰된 항목중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·시험이 불가능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·국립보건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한다.

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②(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검사·시험의뢰한 자에 대한 검사·시험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